

훈련성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이선희	과견연도	2021
훈련분야	행정		
훈련과제	선진국의 다문화교육정책과 사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연구		
훈 련 국	미국		
훈련기관	포틀랜드 주립대학교(Portland State University)		
보 고 내 용			
제 목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과 사례 연구	보고서 매수	
내용요약	<p>현재 우리사회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국제결혼, 외국인투자 증가,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에 의해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주민과 이질 문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p> <p>다문화가족은 한국생활 적응 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특히 다문화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노출됨으로써 사회통합의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생활에 다문화가족이 성공적 안착하고 그들의 자녀가 건강한 서울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공존과 상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다.</p> <p>미국은 이민으로 인하여 생성된 국가로서 이런 역사적 배경에 의해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1960~70년도에 일어났던 시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소수 인종·민족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관련법들이 수립되었다. 미국 다문화사회의 역사와 관련법에 대한 고찰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체계 및 이들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고 이들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다문화교육정책 수립과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p> <p>그래서 서울시도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피부색, 인종, 출신국가로 인한 편견을 가지기 보다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서로 인식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이점을 부각시켜 운명공동체로서 서로를 환영하고 아끼고 도와주는 것이 낫설지 않는 다문화사회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길 바란다.</p>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과 사례 연구

2022년 5월

이 선 희

목 차

- I. 연구의 필요성
- II. 미국 다문화사회의 역사적 배경
 - 1. 미국의 역사
 - 2. 미국의 이민정책
- III. 다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 관련 법 변천과정
 - 1. 다문화교육의 정의
 - 2. 미국의 다문화교육 관련 법 변천과정
- IV. 미국의 정부체계 및 다문화교육정책
 - 1. 미국의 정부체계
 - 2.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
- V.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 우수사례 소개
 - 1. ‘Welcome to Beaverton’ 책자 발간 사례
 - 2. 오리건주 국제난민센터(IRCO) 운영사례
 - 3. 이민자교육프로그램(MEP) 운영 사례
 - 4. 고등학교 동등 프로그램(HEP) 운영 사례
 - 5. ‘Welcoming Week’ 운영 사례
- VI. 결론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미국

2. 훈련기관명: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Portland State University)

3. 훈련분야: 행정

4. 훈련기간: 2021. 7. 1. ~ 2022. 6. 30.

I.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시대가 도래하여 인적·물적·문화적 교류 등이 빈번해지며 우리나라에도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국제결혼, 외국인투자 증가,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에 의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면서 외국노동자들이 유입이 점차 활발해졌다. 1988년은 제조업부분의 취업자 비율이 27.8%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서비스업 부문이 크게 확대됨과 동시에 경제성장이 높아져 자국민들이 소위 3D업종이라는 저임금 생산현장을 기피하여 노동력 부족 현상도 심화되었다. 또한 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이 빈곤 해소를 위해 자국의 풍부한 노동력을 해외로 진출시키려는 노력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1991년 10월에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됨으로써¹⁾ 해외투자기업은 1991년 11월부터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1994년에는 외국인에 대한 산업연수생 제도가 실시되었고 1995년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 지원도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장동진 & 황민혁, 2007).

한국 사회는 위와 같은 변화를 겪으며 외국인 노동자수가 점차 많아져 이제는 특히 자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3D 업종에 해당하는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국제결혼도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된 이유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국제결혼은 크게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사회 국제결혼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유형으로 한국전쟁 이후 하류층 또는 기지촌 출신의 한인 여성과 미국 군인과의 결혼이었으며, 두 번째 유형은 1980년대 이후,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경제력 신장과 해외진출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이 증가하였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안정된 계층의 선택적 결혼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세 번째 유형은 1990년대부터 추진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유형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통해 많은 수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김명엽, 2016).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대도시로 몰리고 특히 여성들은 드라마, 영화에서 접하는 도시에서의 결혼생활을 꿈꾸게 되면서 점차 농촌에서 생활하는 총각들은 결혼할 상대를 찾기 어려워 졌다. 이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국내유입이 가시화 되었다. 1992년 중국과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재개

1) 법무부 훈령 제255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시행세칙」 1991.10.26.

된 이후 초기에는 농촌의 지방 자치단체가 중국의 공신력 있는 민간인과 연계하여 나중에는 도시 간 협정체결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중국동포 여성의 한국 취업방법으로 한국남성과의 결혼이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폐단이 생기기도 하였다. 즉, 내국인 남성의 배우자였던 조선족 여성들이 노동 이주의 방편으로 결혼을 선택, 입국 후 체류자격을 얻으면 일자리를 찾아 가정을 떠나는 사례가 늘었다.

한국사회는 점차 결혼 상대 부족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내 저소득층 남성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국제결혼 대상국은 더욱 다양해졌다(한건수, 2006). 조선족과 필리핀 여성이 중심이 되었던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은 2000년 이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과 결혼으로 확대되었다. 필리핀은 ‘우편신부 금지법’이나 ‘인신매매 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어 실제 이윤을 추구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이 불법인 나라이다. 이에 필리핀 정부가 한국인 업체의 국제결혼 중개업 활동을 단속하자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 중개업체들은 베트남으로 활동 무대를 전환했다. 그런데 베트남에는 이미 대만의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거래하던 베트남 중개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 업자와 연결되자 대거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의 큰 비중을 베트남 여성들이 차지하게 되었다(김명엽, 2016).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문화 사회가 된지 역사가 그리 깊지 않으나 벌써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어서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되는 사회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시급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당시에는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이른바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하였다. 그 결과 산업연수생으로서 한국에 들어와 사실상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목적이 아니라 기술습득 등의 연수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물론 기타 기본적 자유권마저도 침해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었다.

외국인 및 외국계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노동영역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 가족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적법은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상태 유지와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국적법 제3조, 제4조) 이 기간 전에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적용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국적법의 규정을 악용하여 결혼이민자,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유린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하여 기대와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됨으로서 기본적 생존조건마저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자녀들의 급증과 이들에 대한 교육여건의 개선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부모 또는 모의 영향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정형편을 가진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에서의 언어의 어려움, 외모의 차이에 따른 따돌림, 가정 내에서의 부모간의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하여 아동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운철, 2012).

서울시에도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년 현재 446천명으로 서울거주 인구(9,673천명)의 4.6%를 차지하며 그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외국인근로자(70천명), 결혼이민자(32천명), 유학생(44천명), 외국인주민 자녀(31천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이민자, 귀화자 증가와 다문화가정의 출산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도 증가추세이다. 2009년과 2018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결혼이민자(외국국적자)는 30,019명에서 32,677명으로 8.9% 증가하였고 국적취득자(귀화자)는 9,256명에서 42,040명으로 354% 증가하였으며 다문화가족자녀(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12,664명에서 30,008명으로 137%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8년 조사결과 각 연령대의 다문화 수용성이 48~56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여러 다문화교육을 경험한 20대 조차도 60점미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청소년은 71.22점으로 2015년 대비 3.59점 상승하였으나 일반국민은 52.81점으로 2015년 대비 1.14점 더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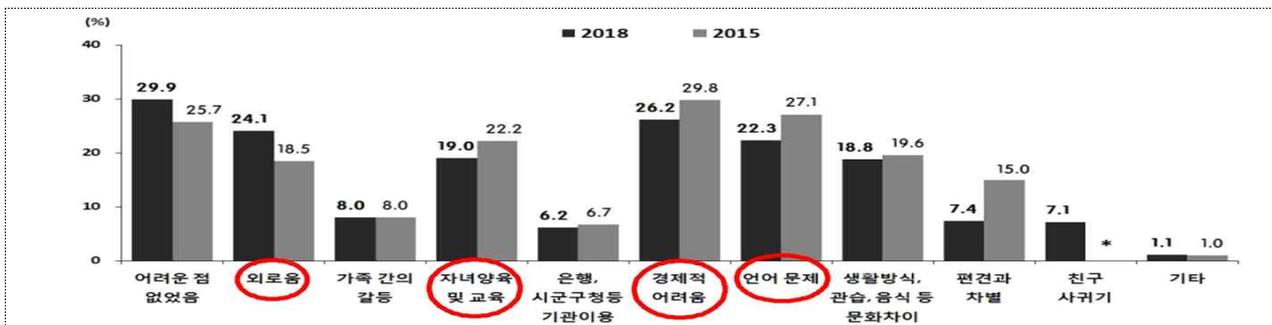
< 그림 1 > 대한민국 국민 연령별 다문화 수용성



[자료: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2018년, 3년주기)]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 시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1위(26.2%)로 '외로움'을 2위(24.1%)로 '언어문제'를 3위(22.3%)로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4위(19%)로 꼽고 있다.

< 그림 2 > 다문화 가족의 한국생활 시 겪는 어려움



[자료: 여성가족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18년, 3년주기)]

다문화 가족의 한국생활 적응 시 어려움은 다문화 자녀들의 삶에도 나타난다. 다문화 자녀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노출됨으로써 사회통합의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주민과 이질 문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문화가족의 서울생활의 성공적 정착과 이들 자녀의 건강한 서울시민으로 성장 지원을 위해 기존 동화주의 관점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외국 선진 정책 연구 필요하다.

미국은 이민으로 인하여 생성된 국가로서 이런 역사적 배경에 의해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1960~70년도에 일어났던 시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소수 인종·민족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관련법들이 수립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선진국의 통합주의적 다문화교육정책과 다양한 제도에 대한 현황분석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추진체계, 우수 사례 등을 조사하고 우리시에 적합한 다문화교육정책 수립과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미국 다문화사회의 역사적 배경

1. 미국의 역사

북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3만 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다. 애니미즘과 토테미즘 등의 원시 신앙을 숭배하는 고 인디언 문화를 기반으로 9세기~10세기 경, 미시시피강과 온타리오 호수 주변으로 소규모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며 부족 연맹의 연합 부족들이 공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한다.

그 후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에스파냐에서 인도를 찾아 항해하며 대서양을 가로지르게 되었고 북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여 인도라고 착각했으며 그래서 원주민들을 인도인 즉 인디언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라 믿었다.

이후 1609년 영국인들이 버지니아 주 해변에 도착하여 제임스 타운을 건설한 것이 현 미국의 모태가 되었고 결국 영국은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며 자치적 의회를 설립하였다.

17세기 영국은 대영제국 건설을 위해 식민지 의회를 해산시키고 자치권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이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식민지 국가들에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게 되었고 1773년에는 보스턴 차사건²⁾이 발발하여 영국과 13개 식민의 전쟁이 시작되

2) 1773년 미국 식민지의 주민들이 영국본국으로부터의 차 수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으켰던 사건

었다. 13개 식민지는 1783년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결국 독립하게 되었고 이에 미국이 탄생하였다.

그런데 19세기에는 자유로운 노동력으로 시장을 확대하던 북동부와 노예의 노동력으로 성장하던 남부의 갈등이 전쟁으로 까지 이어졌다. 1861년 공화당의 링컨대통령이 취임한 후 민주당 기반의 남부 세력과 충돌하게 되었고 1863년 링컨은 모든 노예를 해방하였으며 1865년 북군의 승리로 남부 연합은 해체되었다.

1914년 세계 제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미국은 중립을 고수하다가 1917년 연합군에 가담하고 유럽에 군수 물자를 공급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게 된다. 1929년 세계 대공황³⁾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고 미국은 F.D.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 이래 1939년까지 공황 극복을 위해 실시한 뉴딜정책⁴⁾으로 경제를 회복시켰으나 다시 불황이 시작되었다.

1939년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불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군수품 주문이 폭주하면서 미국의 산업은 활기를 찾게 되고 다시금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세계 초강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국제 평화를 위한 기구 국제연합(UN)이 창설되면서 미국은 UN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제 2차 대전 후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소련이 양분되는 냉전시대로 접어들게 되나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시대가 끝나고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의 역사를 다문화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1609년 영국인들이 버지니아주에 도착해 제임스타운을 건설하여 살 때부터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 인디언들과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고 노예로 입국하게 된 아프리카계 흑인들, 태어난 곳에서 정착하기 어려워 새로운 세계를 찾아 입국한 다양한 국가의 백인종, 아시아계 유색인종 등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충돌하고 화합하며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20세기 초반까지 백인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고수해 왔고 아프리카계나 원주민인 인디언,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은 미국사회에 공존하면서도 그 존재를 존중받지 못하였다.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흑인의 사회적 지위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정계와 언론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었던 것은 “미국은 백인의 나라”라는 주장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장 노골적이고 극단적으로 표현한 집단은 백인 우월주의 테러집단이었던 KKK이지만 이런 생각은 20세기 중반까지 백인 사이에서 광범위 하게 공유되었다고 한다(최재인, 2009).

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 발발(勃發)이 미국의 인종주의에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참전의 이유를 설명하며 “미국인

3) 1929년 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시작으로 자본주의 국가 전체에 파급된 세계적 경제공황
4) 국가가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금융개혁, 농산물 생산 제한 등 자유주의 경제 활동을 조정한 정책

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열정의 문제이지, 인종이나 조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기초해 있고 미국이 운영되어 가는 원리이기도 하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공식적인 선포는 제 1차 세계대전 발발(勃發) 당시의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 행정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해고하는 등 유색인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고, KKK단을 미화하고 유색인에 대한 혐오감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영화 ‘국가의 탄생(Birth of a Nation)’을 백악관에서 공개적으로 관람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인종과 이와 관련된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이다(최재인, 2009).

그러면 제 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어떠한 변화들을 겪으며 현재까지도 세계 최대 강국으로 자리를 유지하는 미국이 다문화, 다인종이 어떻게 서로 통합된 사회를 이루며 운영되고 있는 지 특히 국가의 통치 이념을 보여주는 다문화 관련 법 들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의 이민정책

미국은 강력한 연방제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 내의 모든 이민관련 규정을 망라하는 것은 힘들고 복잡한 작업이어서 연방정부에서 수립한 주요 법규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중반까지도 미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이민 법규는 없었다고 한다. 누구나 간단한 신체검사와 입국심사를 받고 이민 허가 도장을 받는 것으로 이민이 가능했다(Moloney, D. M. 2012).

1783년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결국 독립 국가 된 이래 백여 년이 넘도록 운영된 이러한 이민 역사가 미국을 인종의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큼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나라가 되는 초석이 되었다.

1) 규제적 이민 정책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반)

그런데 19세기 후반부터는 규제적 이민 정책이 제정되기 시작되었다. ‘1882년 이민법령(The Immigration Act of 1882)’은 사회적 약자(undesirable people)로 볼 수 있는 장애인, 범법자, 걸인 등의 이민을 금지 하였다. 또한 동일 해에 ‘중국인 배제령(The Chinese Exclusion Act)’을 제정하여 중국 출신 이민자의 귀화(시민권 획득)을 원천 봉쇄하였다.

그 이후 1924년에 개정된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of 1924)에서는 신규 이민자의 본국적에 따른 할당제를 규정하였다(Moloney, D. M. 2012).

이렇게 미국의 이민법규는 강력하게 이민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이민 정책은 당시 미국사회를 지배했던 ‘이민배척주의(Nativism)’와 ‘인종주의(Racism)’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Healey, J. F. 2011).

이는 미국 사회의 주류라고 여기는 백인-청도교(Anglo Protestant) 인들이 자신들의 가치가 이민을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인종들의 권리, 문화, 역할로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보수적인 반응으로 보인다(김태근, 2017).

2) 포용적 이민 정책 (1940년대 ~ 1980년대 후반)

그런데 제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겪어내며 미국의 보수적 이민정책도 변화하게 된다. 이전의 규제정책들을 폐지하는 큰 변화를 이루어 내어 '1943년 이민법령(The Immigration Act of 1943)'은 중국인 배제령을 무효화하여 중국 이민자의 귀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1952년 이민 및 국적 법령(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에서는 백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할당제를 없앴다(Ueda, R. 2006).

이는 제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겪으며 맺어진 연합국과 서방세계에 대한 배려·보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1940~1950년대를 지나며 형성된 이러한 친 이민 정책은 1960년대의 시민권 운동(Civil Right Movements)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1965년 이민 및 국적 법령(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에서는 모든 인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민자의 전문적 기술과 가족 재통합(Family reunification)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새로운 이민 정책이 수립된다(Geber, D. A. 2011).

이러한 새로운 기초의 이민정책은 1960년 중반에 성립되어 1980년대 초반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가며 정권을 잡았지만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김태근, 2017).

그런데 미국의 이민정책은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에 관한 법령(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이 제정되면서 큰 변화를 갖게 되었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불법 이민자 고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갖고 있었고 1982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 한 모든 불법 이민 노동자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강제 추방을 피하도록 허락하며 세금, 벌금 등의 부과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법령의 핵심내용은 1982년에 입국한 모든 불법 이민 노동자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법령은 두 가지 부분에서 큰 변화의 의의가 있다. 첫째는 '신규 이민자'가 아닌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고 둘째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반영되던 이전과는 달리 경제적인 요인을 주로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1978년 오일쇼크⁵⁾ 이후 이민자의 노동 공급을 불법이든 합법이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였고 실제 이 때의 미국 노동시장엔 이민자들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었

5) 1978년 이란혁명 이후, 석유 공급 부족 및 가격 폭등으로 세계경제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은 사건

다.(Jansson, B. S. 2012) 이리하여 보수적인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아래에서도 이와 같은 개혁적인 이민정책이 태어나게 되었다(김태근, 2017).

3) 새로운 시도 (오바마 행정부 이후)

레이건 행정부 이래 30년간 이민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며 혁신적인 변화가 시도되었다. 이는 2014년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정책으로 미국의 불법체류자인 ‘서류 미비 청년’들을 포용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다. 4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자 했던 이 시도는 당시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를 피해 의회의 인준이 필요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 직권에 의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2016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오바마의 이민 개혁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김태근, 2017)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는 자국민들이 불법이민자로 인해 일자리 상실과 사회적 이질감 및 치안불안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무슬림 입국 금지, 불법 체류자 추방,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등 강경한 이민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 후 임기 초부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남미 불법이민자(caravans) 및 테러리스트의 미국 유입 차단과 거짓 망명자(asylum fraud) 색출 등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이민 정책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이민정책을 펼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였고, 이슬람권 국가로부터의 이민 제한 역시 풀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할 목적의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세금납부를 비롯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 5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3년 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통념과는 달리 미국 내 여론은 불법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전체 노동시장 구성원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이미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들의 약 60%는 이미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렇듯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다양성을 강화하는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하는 세력이 여전히 정치권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오

랫동안 개신교 신자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사회이다. 그런데 최근 인구구성의 변화로 인해 2045년에는 백인의 비율이 50%가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은 백인 유권자들에게 심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인구적, 경제적, 정치적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민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다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 관련 법 변천과정

1. 다문화교육의 정의

다문화 사회는 정보화 사회이자 지구촌으로 표현된 21세기의 다양한 측면 중 하나이다. 서울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전체 인구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서울은 계속해서 다문화 사회에 접근하고 있다. 한국은 단일 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응의 중요 역할로 다문화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보편적 정의는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에 따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정의철, 2013). 한국 사회에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하인츠 워드의 방문 이후였다. 다문화교육의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 학자는 다문화교육을 ‘자신이 속한 인종, 인종, 사회 계층, 성별 그룹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 기회를 가져야 하는 방식’으로 개념화하며 다문화교육도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학교를 개혁하려는 교육 개혁 운동이라고 말했다(Banks, J. A. 2020). 또 다른 학자들은 다문화교육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인종적 공포를 통해 진단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다원적 사회에서 건설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교육 전략’으로 정의했다(Mitchell, B. M, & Salsbury, Robert E. 1996).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문화교육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고 발전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브라질 사람들은 아마존 분지의 원주민들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시도했고, 미국의 경우는 노예로 포함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의 권리를 주기 위한 개혁의 하나로 시작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배경은 위에서 소개한 나라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면서 외국노동자들이 유입이 점차 활발해졌다. 서비스업 부문이 크게 확대됨과 동시에 경제성장이 높아져 자국민들이 소위 3D업종이라는 저임금 생산현장을 기피하여 노동력 부족 현상도 심화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주노동자

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시대가 도래하여 인적·물적·문화적 교류 등이 빈번해지며 우리나라에도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추진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유형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통해 많은 수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김명엽, 2016).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대도시로 몰리고 특히 여성들은 드라마, 영화에서 접하는 도시에서의 결혼생활을 꿈꾸게 되면서 점차 농촌에서 생활하는 총각들은 결혼할 상대를 찾기 어려워 졌다. 한국사회는 점차 결혼 상대 부족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내 저소득층 남성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족과 필리핀 여성이 중심이 되었던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은 2000년 이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으로 국제결혼 대상국은 더욱 다양해졌다(한건수, 2006). 그런데 베트남에는 이미 대만의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거래하던 베트남 중개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 업자와 연결되자 대거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게 되어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의 큰 비중을 베트남 여성들이 차지하게 되었다(김명엽, 2016).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단일민족 국가로서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민에 대한 정책이 제도화되었다. 다문화가족들은 외모와 언어장벽으로 한국생활을 적응하는 삶이 힘들었고 그들의 자녀도 한국 학교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 학교를 중퇴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늘면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의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문화교육’을 ‘다문화가족이 자신의 문화와 언어에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싶다. 또한 ‘사회의 기존 구성원들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와 교육기관을 포함한 기존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다음 세기에 효과적으로 살고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민족 중심적인 태도가 같이 상생하여야 하는 사회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 교육자들의 희망이다. 다문화교육은 진행 중인 과정이다. 그것들은 결코 완전히 성취될 수 없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2. 미국의 다문화교육 관련 법 변천과정

미국은 이민으로 인하여 생성된 국가로서 이런 역사적 배경에 의해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1960~70년도에 일어났던 시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소수 인종·민족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관련법들이 수립되었다. 사회 전반 시민권 운동의 확장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차별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민 학생들도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 학생들 모두가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초·중등 교육법의 교육 평등 조항’이 만들어 졌다.

이 후에도 이중 언어 교육법(Bilingual Education Act of 1968), 평등 교육 기회법(Equal Education Opportunities Act of 1974) 등과 같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각종 법률과 관련 하부 조항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에는 소수인종 학생들의 학업성취 보장을 위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한 아동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2002),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방지해서 모든 학생의 학업 성취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2015)이 제정 되었다.

이제는 각 법령들의 주요내용과 변천하게 된 배경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초·중등 교육법의 교육 평등 조항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초등 및 중등 교육법 (ESEA)은 89차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1965년 4월 11일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 서명되었다. 존슨은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 연방 교육 정책의 주요 개혁을 제안했고 그의 제안은 신속하게 초등 및 중등 교육법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은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강조하며 빈곤 가정의 자녀가 있는 학교에 연방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성 개발,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지원, 학부모 참여 촉진을 통해 학생 간의 성취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 및 중등 교육법(ESEA)은 Lyndon B. Johnson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의 초석이었고 이 법은 빈곤에 대한 국가적 공격의 최전선에 교육을 가져와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에 대한 획기적인 약속을 나타냈다. 이 법은 높은 수준과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초등 및 중등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법령이다. 이 법의 다양한 세분화는 ‘타이틀’로 지정되고 로마 숫자 지정이 뒤따른다.

< 원본 1965 법의 섹션 >

타이틀 I - 저소득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지역 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타이틀 II - 학교 도서관 자원, 교과서 및 기타 교육 자료

- 타이틀 III - 보충 교육 센터 및 서비스
- 타이틀 IV - 교육 연구 및 훈련
- 타이틀 V - 주 교육부 강화를 위한 교부금
- 타이틀 VI - 장애 아동 지원
- 타이틀 VII - 직업교육
- 타이틀 VIII - 영재교육

초등 및 중등 교육법 조항인 Title I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와 학군에 자금을 분배하기 위해 미국 교육부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Title I은 ESEA가 승인한 전체 자금의 5/6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책 및 입법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원래 개념에서 Title I은 도시 또는 시골 학교 시스템에 다니는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와 교외 학교 시스템에 다니는 중산층 어린이 사이의 읽기, 쓰기 및 수학 기술 격차를 좁히도록 설계되었다. Title II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모두를 위한 학교 도서관과 교과서 구입을 지원했으며 유치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 1966년 성인 교육법(Adult Education Act of 1966)으로 인용된 Title III은 보충 교육 센터 및 서비스가 학교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Title III은 학교가 개강하지 않을 때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고립된 농촌 지역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Title III은 학교가 개강하지 않을 때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고립된 농촌 지역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Title IV는 교육 연구 및 훈련 자금을 위해 5년 동안 1억 달러를 할당했으며, Title V는 주 부처에 조성된 보조금을 보완했다. Title VI는 장애인 교육에 전념했으며 Title VII는 1963년 직업 교육법을 강화했고 Title VIII는 영재 및 재능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교사 봉사단을 설립했다.

초중등 교육법(ESEA)의 목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장애, 이동 문제, 학습 장애, 빈곤 또는 일시적인 장애를 갖고 있거나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발생 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격 학교 및 학군을 위한 국영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이 초등 및 중등학교 교육에 연방 자금을 할당하는 것으로 변모되었다.

1965년 이래로 ESEA는 의회에서 여러 번 수정되고 재승인 되었다. 이러한 재승인 과정에서 다양한 수정 및 수정 사항이 도입된다. 1968년에 개정된 법률은 이중언어 교육법과 장애인 교육법의 기초를 제공했고 ‘이중 언어 교육법’은 아메

리카 원주민 및 기타 그룹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 및 교육 노력을 지원한다.

2) 이중 언어 교육법

(Bilingual Education Act of 1968)

1967년 ESEA 재승인 중에 추가된 Title VII는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1967년 초등 및 중등 교육 수정안의 제목 VII 라고도 하는 이중 언어 교육법(BEA)은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LESA, limited English speaking ability) 학생의 요구를 인식한 최초의 미국 연방법이다. BEA는 1967년 텍사스 상원의원 Ralph Yarborough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90차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1968년 1월 2일 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서명했다.

미국의 현대 이중 언어 교육 시대는 쿠바 혁명에서 시작되었다. 1959년 이후에 고국을 탈출한 쿠바인들은 전문직과 비즈니스 계급에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들의 언어(스페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새로운 곳에서 성공하려는 열망이 있었다. 1967년 Yarborough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을 때 그는 이 법안을 ‘영어만 사용하는 정책, 스페인어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에서의 열악한 성적과 높은 중퇴율... 그리고 큰 심리적 피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상했다. 원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1968년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중 언어 교육법(BEA)으로 바뀌었고 영어가 유창 하지 않은 초등 및 중등 학생에게 이 법안은 연방 정부가 이제 미국 공교육에서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한다는 신호였다.

BEA는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 보조금의 형태로 교육구에 연방기금을 제공했고 이 보조금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 구매, 교사 및 교사 보조 교육, 자료 개발 및 배포, 의미 있는 학부모 참여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보조금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정적 영향력은 지역 및 주 교육 기관(LEA 및 SEA)에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이러한 기금의 범위를 제한했다. 우선, 단순한 틀의 관점에서 볼 때, 원래의 1968년 BEA는 학생들의 모국어에 대한 교육이나 유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포함하지 않아 이 법안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제한하고 있었다. 재정적 관점에서 BEA는 제한적 이어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은 3세에서 8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었고 또한 이 법은 LESA 학생 교육을 위한 영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탐색 프로그램에만 자금을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이 기금은 처음에 평균

소득이 ESEA(1968년 \$3,000)에 명시된 빈곤선 미만인 지역 사회를 위해서만 예비 되어 이 법안이 가난한 라틴계를 위한 것으로 제한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과적으로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 찾는 급증하는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많은 제한 사항과 많은 BEA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자금 조달은 처음 3년 동안 8,500만 달러로 제한되었다. 1972년까지 약 5,000,000명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 중 전국적으로 100,391명의 학생만이 Title VII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다(Petrzela, 2010).

1968년 이중 언어 교육법은 구체적이지 않았고 교육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민권운동가들은 이 법이 소수민족 언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 1974년에는 LESA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지정된 프로그램의 의도와 설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래 법을 수정했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중요 사건은 'Lau 대 Nichols 사건'과 '1974년 평등 교육 기회법'이다.

획기적인 법원 사건 '라우 대 니콜스(Lau v. Nichols)'는 샌프란시스코 통합 교육구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평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1,800명의 중국 학생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1974년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자원, 교사 및 커리큘럼이 영어를 구사하는데 제한적인 학생에게 교육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언어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라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학군이 이중 언어 프로그램 및 ESL 수업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학생들에게 동일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도록 했다.

1974년 평등교육기회법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해에 교육기회평등법이 통과되었고 언어 장벽을 허무는 수단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인용함으로써, 그것은 효과적으로 모든 학생과 학군으로 라우규칙을 확장했다. 그것은 또한 학군의 책무성을 증가시켜 학군은 연방 또는 주 재정 지원에 관계없이 LESA 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했다. 즉, 많은 수의 영어 학습자가 있는 학교는 연방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야 했다.

1974년 수정된 이중 언어 교육법은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어와 학생의 모국어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LESA 학생들이 학생의 모국어와 문화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정규 수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의한다. 그리고 학교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컨설턴트 및 트레이너의 지역 지원 센터를 만든다.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위한 교과 과정, 직원 및 연구를 확장하려는 학교의 노력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역량 강화 노력을 규정한다.

1974년 개정안을 위한 기금은 1968년 750만 달러에서 68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은 368,000명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 후 1978년에는 법을 확장하고 적격 학생의 정의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수정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수정 사항은 다음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다.

모국어 교육의 엄격한 과도기적 성격을 강조,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LEP) 학생으로 자격 확대, 이중 언어 프로그램에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의 등록 허가이다.

1978년 개정안을 위한 기금은 1974년 6,800만 달러에서 1억 3,500만 달러로 증가하여 565개 학교와 서비스 센터, 대학원 펠로우십 및 이중 언어 교육자가 되고자 하는 학부생을 위한 훈련을 포함한 중등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1984년에는 이중 언어 교육법이 추가로 수정되었고 이 기간 동안 제정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LEP(limited English proficient)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결정할 때 학교에 더 많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공함으로써 LEP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의 유연성을 높이고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수정안을 위한 기금은 1억 3,940만 달러였으며 연방 정부의 자금 없이 LEP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지구에 중점을 두었다(Stewner-Manzanares, 1988).

BEA는 1988년에 다시 수정되었고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 교육 기관에 대한 기금 증가, ‘특별 대안’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전문 교육을 위한 친목 프로그램 만들기, 1988년 개정안을 위한 자금은 1억 5,900만 달러였으며 자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구체적으

로, 프로그램 개발에 최소 60%를 지출하고 교육에 최소 25%의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1994년 이중 언어 교육법(BEA) 재승인은 원래 BEA와 동일한 원칙을 유지하고, 새로운 보조금 범주를 도입하고, 이중 언어 사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설정하고, 토착 언어를 고려했다. 전반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개혁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중 언어 사용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이중 언어 교육법 법률은 특정 교육 관행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언어 소수자 학생들을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 1994년 재승인은 이중 언어 능력을 개발한 신청서에 우선권을 부여했으며, 지역 교육 기관은 BEA의 지침에 따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2000 회계연도에 691개의 이중 언어 교육 교육 서비스 보조금이 총 1억 6200만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 지급되었고 가장 큰 교부금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 각각 약 5,800만 달러와 2,250만 달러로 제공되었다.

이렇듯 변천한 BEA의 기본 이념은 학생들이 모국어를 유지하면서 영어를 배우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98년에 미국 언어 학회는 이중 언어 교육이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BEA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하면서 그들의 모국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BEA는 교육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교육 정책이 학업 성과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또한 다양성과 이민에 대한 문화적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방 정부가 미국 이민자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 주 및 연방 차원의 이중 언어 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문을 열었다.

3) 평등 교육 기회법

(Equal Education Opportunities Act of 1974)

1974년 평등 교육 기회법(EEOA)은 1974년 8월 21일에 발효된 미국 연방법으로 학생의 인종 차별을 포함하여 교직원,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학군이 학생의 평등한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미국의 어떤 주에서도 교육 기관에 의한 의도적인 분리를 통해 성별,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을 기반으로 한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

는데 여기서 ‘동등한 교육 기회’란 모든 학생이 학습 시설(학교, 교실, 연구실), 자원, 과외 및 과외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 과정의 모든 측면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평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평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거부할 수 없고 개인이 동료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을 대신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법원 사건은 아래와 같다.

(1) 라우 대 니콜스 (1974)

앞에서도 언급된 소송사건으로 이 사건은 미국 대법원이 ‘적절한 조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해석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한다. 1974년 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학군이 중국계 학생들의 수업 참여 기회를 거부함으로써 1964년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과서, 책상, 교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비영어권자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중국어와 영어를 병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 Castañeda 대 Pickard (1981)

1981년 미국 5차 항소법원은 학교 관계자들이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권리를 부인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 가지 시험을 만들었다. 이 테스트 하에서 영어 학습자를 위한 허용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인정된 교육과정
- 교육과정 수행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또는 방법
-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입증된 프로그램

법원은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은 어떠한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나머지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3) Plyler 대 Doe (1982)

1982년 법원은 공립학교 학군이 이민자 학생들이 무료 공교육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서류미비 아동이 동일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연령이 될 때까지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립학교와 교직원들은 학생이 시민권 상태에 따라 공립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원은 학교 관계자가 학생에게 영주권과 같은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신, 그들은 학생에

게 그들이 학군 경계 내에 거주한다는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Keyes 대 학군 1 (1983)

1983년 Castañeda v. Pickard 에서 만들어진 세 부분으로 구성된 테스트는 콜로라도 주 덴버의 한 학군이 백인 학생과 멕시코계 미국인 학생 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데 참여 했다는 것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법원은 인종차별 철폐를 명령했다.

(5) 미국 대 텍사스 주 (1982)

1982년 법원은 텍사스주가 주로 라틴계 혈통의 영어 학습자에게 EEOA에 따른 언어 장벽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주립 교육 기관은 영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중 언어 서비스를 채택했다.

(6) 플로레스 대 애리조나 (2000)

이 사건은 1992년 학교가 영어 학습자에게 충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학교를 비난하는 학부모로부터 처음 제기되었으며, 2000년 법원은 교육 프로그램에 적절한 자금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교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법원은 2002년 1월 31일 현재 교육자원이 충분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고, 2009년에는 EEOA 가 공식적으로 위반되었다고 판결했다.

4) 아동 낙오 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 2002)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월 23일에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방 지원금의 사용을 처음 제안했으나 비평가들은 이 움직임이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한 학교에서 자금을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동낙오방지(NCLB)법은 2001년 3월 22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되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면서 양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2002년 1월 8일 부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미국 교육부에 따르면 2001년 아동 낙오 방지(NCLB)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의 교육 결과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높이고 저 성과와 고 성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공립학교가 매년 선별된 학년의 학생들에게 전국적인 표준화 시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학생의 교육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 전문성 개발, 교육 기술, 학부모 참여 활동 등과 같이 학생들이 교육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도 명시하고 있다.

1965년 초등 및 중등 교육법(ESEA)을 통해 타이틀 I 자금을 지원 받는 학교는 시험 점수에서 적절한 연간 진척도(AYP)를 달성해야 한다(예: 매년 5학년 학생은 전년도 5학년 학생보다 표준화 시험에서 더 나은 성적을 내야 함)(Hemelt, Steven W. 2011).

그 결과가 반복적으로 좋지 않으면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Dillon, Erin & Rotherham, Andy, 2009).

- 2년 연속 AYP에 결석한 학교는 '개선 필요'로 공개적으로 표시되며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과목에 대한 2년 개선 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학생들은 해당 학군 내에서 더 우수한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
- 3년 연속 AYP가 누락되면 학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 과외 및 기타 보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4년 연속 AYP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교는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되며, 여기에는 직원의 전면적인 교체, 새 커리큘럼 도입 또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 연장이 포함될 수 있음
- 5년째 실패하면 학교 전체를 재구성할 계획을 세우게 됨
- 6년 연속 AYP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교 전체를 재구성할 계획이 실행됨. 일반적인 옵션에는 학교 폐쇄, 학교 운영을 위해 사설 회사를 고용하거나 주 교육청에 학교를 직접 운영하도록 요청하는 것 등이 포함됨

반면 아동 낙오 방지(NCLB)법에 의하면 국가는 법률의 다음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AYP 목표를 수립해야 했다(Linn, Robert L.; Eva L. Baker; Damian W Betebenner, 2002).

- 주정부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학생, 장애 학생 및 영어 능력이 제한된 학생과 같은 특정 그룹과 모든 학생의 성취 향상을 위해 AYP 주 전체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개발해야 함
- 목표는 12년 이내에(즉, 2013-14 학년도 말까지) 모든 학생을 능숙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함
- AYP는 기본적으로 주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주에서 정의한 하나의 추가 학업 지표도 포함해야 함
- AYP 목표는 학교 수준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2년 연속 AYP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교는 개선 대상으로 식별됨
- 학교 AYP 결과는 각 학생 그룹이 AYP 목표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에 식별된 각 학생 그룹에 대해 별도로 보고되어야 함
- 각 그룹의 최소 95%는 주 평가에 참여해야 함
- 주에서는 AYP 결정을 내리는 데 최대 3년의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음

이 법은 주정부가 모든 학생에게 ‘높은 자격을 갖춘’ 교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각 주는 ‘높은 자격’으로 간주되는 항목에 대해 자체 표준을 설정하고 주에서 학생들을 위한 ‘높고 도전적인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 받는다. 각 주는 스스로 ‘하나의 높고 도전적인 기준’을 결정하지만, 교과 과정 기준은 다른 도시나 주의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학생들의 약물 및 알코올 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특정위반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이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에 기금을 제공한다.

이리하여 이법은 교사, 학교 및 학군에 책임성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었다.

NCLB 지지자들은 이 법안의 강력한 긍정적인 점 중 하나가 학교와 교사에게 요구되는 책무성 증대라고 주장한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는 회계 연도 동안 학생 향상을 판단하는 연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연간 표준화 시험은 학교가 요구되는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필요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는 감소된 기금 및 책임 증가에 기여하는 기타 처벌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목표는 교사와 학교가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학교에만 피해를 줄 뿐 학생 교육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법은 학생들의 학업능력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었다. 미국 교육부는 2005년 7월에 발표된 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결과를 지적하며 읽기와 수학에서 학생의 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며 지난 5년 동안 9세 아동은 읽기에서 이전 28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 9세 연령 그룹은 보고서 역사상 읽기(1971년 이후)와 수학(1973년 이후)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흑인과 히스패닉계 9세 아동의 읽기 및 수학 점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표준화된 테스트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있다.

비평가들은 표준화된 시험(한 주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시험을 치를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사들로 하여금 전반적인 지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시험성적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 일부 기술을 가르치도록 권장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의 모든 문제가 단순한 덧셈 문제(예: $2 + 3$ 은 무엇입니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교사는 덧셈의 실제 적용에 수업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리 등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기 보다는 시험 점수를 높이는 것에 더 중점을 두려고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술 및 선택과목에도 부정적인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NCLB의 주요 초점은 경제적 성공과 관련된 영역인 읽기, 쓰기 및 수학 능력으로 2000년대 후반 경기 침체의 예산위기와 결합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NCLB의 책무성 기준에 속하지 않는 많은 과목의 수업과 자원을 줄이거나 없었다. 2007년 이후로 거의 71%의 학교에서 수학과 영어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역사, 예술, 언어, 음악과 같은 과목의 수업 시간을 단축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초 능력이 미숙한 개별 학생은 예술, 스포츠 또는 기타 선택 과목이 아닌 보충 읽기 또는 수학 수업을 더 듣도록 한다(Beveridge, T, 2010).

특히, NCLB는 영재, 재능 및 기타 우수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하지 않아서 영재 교육에 대한 연방 기금은 이 법이 제정된 첫 5년 동안 3분의 1로 감소했다. 미시간과 다른 주에서는 영재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 기금이 법이 제정된 다음 해에 최대 90%까지 삭감되었다. (Cloud, John. 2007)

그런데 이법이 타 인종 및 소수 민족 학생에 대해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이 법은 모두에게 공통의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미국의 계급과 인종적 성취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NCLB는 인종적 성취 격차를 없애는 데 있어 엇갈린 성공을 보여주었다. 비록 시험 점수가 향상되고 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지만, 연구는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인종적 성취 격차가 유의미한 방식으로 좁혀졌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한다. (Reardon, S.F., Greenberg, E.H., Kalogrides, D., Shores, K.A., & Valentino, R.A. 2013)

NCLB는 학교와 지역이 저소득층 학생, 장애인 학생, 주요 인종 및 민족 하위 집단 학생 등 전통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아동 집단의 학업 성취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요구한다. 이전의 많은 국가가 만든 책임 시스템은 평균적인 학교 성적만을 측정했기 때문에 학교는 부유층과 혜택 받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큰 성취 격차가 있더라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Kim, J. S.; Sunderman, G. L. 2005)

그런데 이 법과 관련된 학생 성취도 평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법에는 영어를 배우는 모든 학생들은 모국어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동 3년 기간을 갖게 되며, 그 후에는 일반적으로 영어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역 교육 당국은 사례별로 모국어로 된 시험에 대해 2년 동안 개별 영어 학습자에게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개 주에서만 영어 학습자를 모국어로 테스트한다(거의 전적으로 스페인어 사용자).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는 영어 평가를 받는다(Crawford, J. 2007).

그러나 결국 낙오아동방지법(NCLB)은 표준기반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시험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법안은 광범위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연방 사회 정책이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아동 낙오 방지법은 2007년에 재승인될 예정이었으나 초당적 협력 부족으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에서 NCLB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NCLB 기준에서는 성공했지만 실패한 학교에 대해 많은 주에 면제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는 일반적으로 학교가 Common Core⁶⁾ 와 같은 학업 표준을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NCLB는 일반적으로 학교와 주에서 빈곤층 및 소수 민족 아동의 교육을 보장하는 데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표준화된 시험이 늘어나면서 많은 부모들의 반발이 있었고, 많은 부모들은 교육에서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를 요구했다(Rich, Motoko. 2015).

5) 모든 학생 성공법

(Every Student Succeeds Act, 2015)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은 2015년 12월에 통과된 미국 법으로 미국 K-12 공교육 정책을 규율한다. 이 법안은 1980년대 이후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미국 연방 정부의 역할을 축소한 최초의 법안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전신인 아동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대체했으며 학생에게 제공되는 정기적인 표준화 시험과 관련된 조항을 수정했지만 삭제하지는 않았다. 학생들이 표준화된 시험을 치르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데에는 연방 정부의 명령과 인센티브가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수업 시간에 부담을 주거나 학생이나 교육자에게 잘 제공되지 않는 관행’을 완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에 제공했다.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법령, 규정 및 지침은 주에서 평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법령이나 규정은 시험 설계에 대한 특정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미국 교육부 지침 문서에서는 시험이 ‘필요한 최소 시간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결정할 때 주와 학군에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주정부는 목표와 표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미국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추가 피드백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년 3학년부터 8학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한번 시험을 보게 되며 이 표준화된 시험은 교실에서 각 학생의 능력과 계획을 실행하는 주정부의 성공을 결정한다. 또한 주정부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교가 직면할 수 있는 결과와 향후 몇 년 동안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ESSA의 또 다른 주요 목표는 인종, 소득, 장애, 민족 또는 영어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6) 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 (단순히 Common Core 라고도 함)는 2010년부터 미국 전역의 K-12 학생들이 각 학교 학년을 마칠 때 영어 및 수학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교육 이니셔티브임. 이 이니셔티브는 전국 주지사 협회와 주립 학교 최고 책임자 협의회가 후원함.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 경험과 성취감 있는 직업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ESSA는 또한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대학 및 직업 상담 및 고급 배치 과정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Darrow, Alice-Ann. 2016).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은 또한 장애 학생에 대한 기대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설정한다. 대부분의 장애 학생은 동일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ESSA는 장애 학생의 10%에 해당하는 1%의 학생에게 일반적인 표준 시험 면제를 허용한다. 이 1%는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해 예약되어 있으며 대신 대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가 장애를 정의하지 않고 각 주에서 대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을 결정하기 위해 자체 정의를 결정한다. 그러나 모든 주에서 장애인을 같은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서로 비교할 때 이것은 더 어려운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ESSA는 또한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장애 학생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 때문에 ESSA는 주정부가 캠퍼스 내 괴롭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Samuels, Christina A. 2016).

ESSA(Every Student Succeeds Act)변에 관한 주요 특징을 다시 말하면 이법은 미국 공립학교의 주요 교육법이며 학생들이 배우고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학교에 책임을 묻고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을 포함하여 불우한 학생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이 대통령 보좌관과 비서실장의 '규제 동결 보류 검토'의 취임식 지시문은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의 일부를 포함하여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연기했다. 2017년 2월 10일, 미국 교육부장관 Betsy DeVos는 주립 학교 최고 책임자에게 ESSA 계획을 개발하는 데 있어 '주정부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편지를 썼고 수정된 템플릿이 발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3월,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 검토법을 사용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책무성 규정을 폐지했다(Ujifusa, Andrew. 2018).

이제까지 우리는 미국의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법의 발달과정과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및 의의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다문화관련 법들이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어떤 추진체계를 거쳐서 시행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IV. 미국의 정부체계 및 다문화교육정책

1. 미국의 정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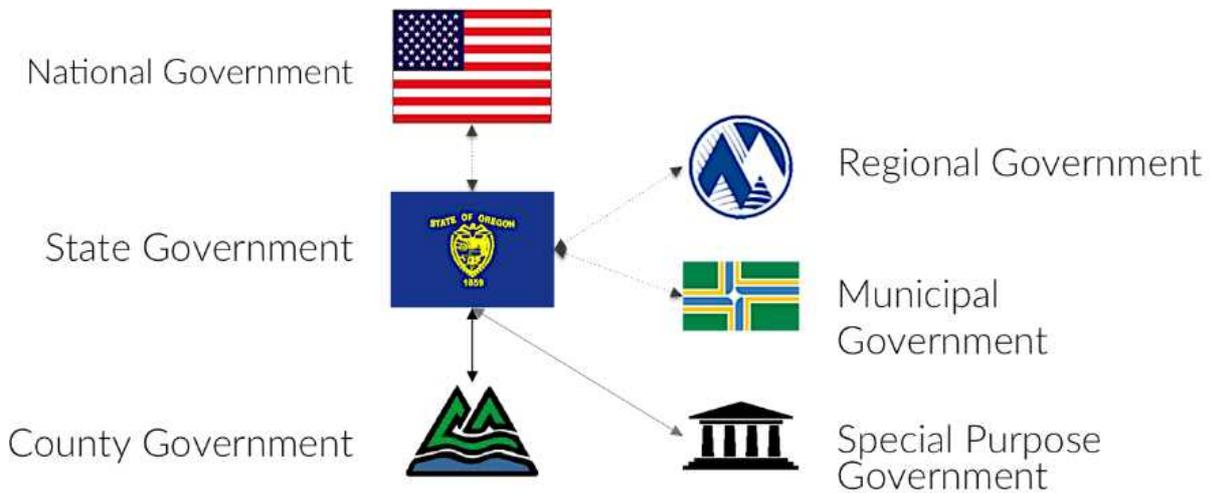
미국은 헌법에 의거하여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과 국가의 권력을 중앙정부와 각주가 나누어 가지는 연방주의의 특징을 가진다. 즉 미합중국, 약칭 합중국 또는 미국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다.

미국 연방 정부는 중앙 정부적 성격을 띠며 각 주마다 따로 있는 주 정부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주 정부는 지역 자치정부 성격을 띤다. 미국 연방 정부의 수장은 미국 대통령이며, 주 정부의 수장은 주지사(Governor)이다.

미국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는 미국의 헌법으로 세워졌고 중앙집권화 된 미국의 정부체이다. 연방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기관으로 나뉜다. 권력 분립을 통한 균형을 통해 이 기관은 각각은 저마다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권한은 다른 두 기관을 관할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관은 다른 기관들로부터 관할을 받기도 한다. 미국의 정책은 미국 안팎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연방 정부의 권력은 전반적으로 각 주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에 일부 제한을 받는다(김복래, 2009).

미국은 정부체계는 위계에 의한 관계 보다는 협력과 경쟁에 더 가깝다.

< 그림 3 > 미국의 정부체계 관계도



[자료: PSU 세미나 Dan Vizzini의 ‘An Introduction to Municipal Government in Oregon and the USA’ 에서 발췌]

미국의 연방 제도에서 시민은 보통 세 단계의 정부 즉 연방, 주, 지역 단위에 속한다. 미국 연방 정부는 주로 외교정책, 국방, 통화, 이민 등 나라 전체에 통일되게 적용하여 진행되는 범위의 일을 맡고 주 정부는 교육, 복지, 교통 등 좀 더 주별 상황에 맞춰 다르게 진행되어야 할 정책들을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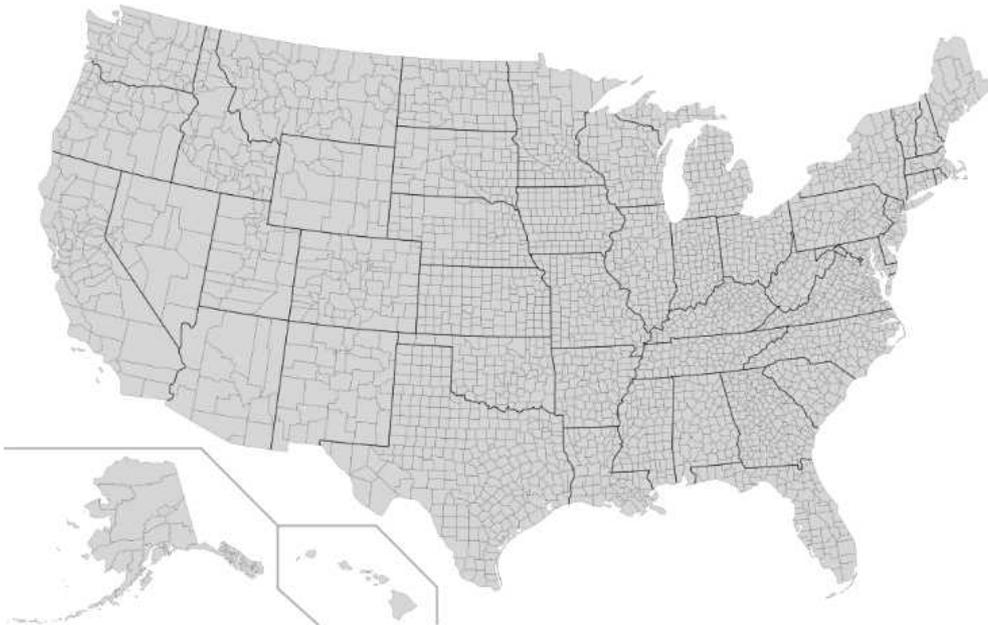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50개의 주 각각이 별도의 민주주의 통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아래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의 카운티 정부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행정을 하고 있다. 오레곤 주 한곳에도 36개의 카운티가 있으며 미국 전역에는 총 카운티의 수는 3,144개에 이른다.

< 그림 4 > 미국의 50개 주



[자료: PSU 세미나 Dan Vizzini의 'An Introduction to Municipal Government in Oregon and the USA' 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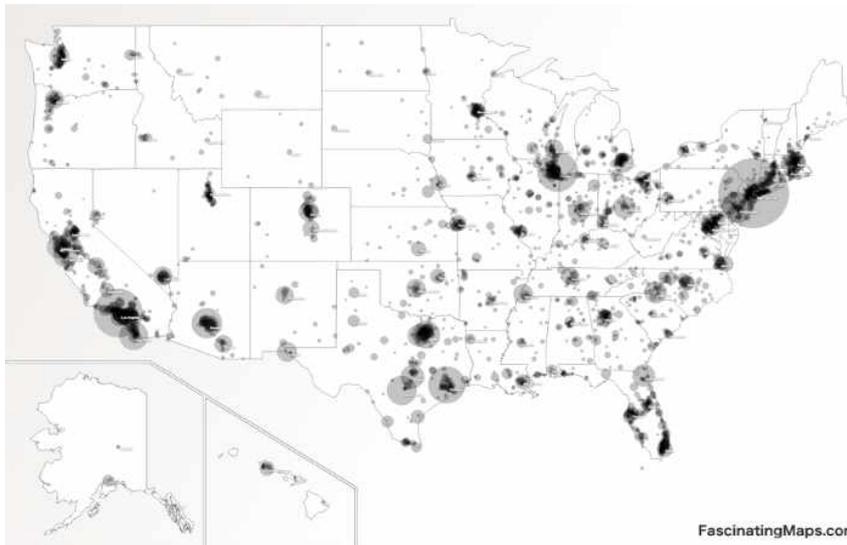
< 그림 5 > 미국의 3,144개 카운티



[자료: PSU 세미나 Dan Vizzini의 'An Introduction to Municipal Government in Oregon and the USA' 에서 발췌]

시행정부(Municipal Government)는 카운티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정부로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고 지방 채권을 발행하고 서비스 계약과 정부 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선출되거나 임명된 이사회가 주도한다. 미국의 모든 시행정부 대상 지역에는 15,00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다. 참고로 오레곤주의 시행정부는 급수, 폐수 수집 및 처리, 교통 서비스, 항만 시설 및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림 6 > 미국의 Cities and Municipalities



[자료: PSU 세미나 Dan Vizzini의 'An Introduction to Municipal Government in Oregon and the USA' 에서 발췌]

정부기관 중 다문화 사회 관련한 기관에 대해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표 1 > 미국 다문화사회 관련 부처

행정부처	독립기관 및 공사
① 법무부 (DepartmentofJustice) - 이민심사국 (EXECUTIVEOFFICEFOR IMMIGRATION REVIEW) ② 보건후생부 (DepartmentofHealth&HumanServices) - 인디언 보건국 감독국 (DIRECTOR, INDIAN HEALTH SERVICE) - 신뢰기반/공동체 주도센터 (DIRECTOR, CENTER FOR FAITH-BASED AND COMMUNITYINITIATIVES) ③ 내무부(DepartmentofInterior) - 인디언 문제 담당국 (BureauofIndianAffairs) - 인디언 특별 재산 관리실 (The Office of the SpecialTrustee for American Indians)	① 균등고용기회위원회 (EqualEmploymentOpportunity Commission), ② 사회보장청 (SocialSecurityAdministration), ③ 미국시민권 위원회 (U.S.CommissiononCivilRights)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선진각국의 정부조직 관리체계 연구' 참조]

이중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의 인디언 보건국 감독국(DIRECTOR, INDIAN HEALTH SERVICE)은 아메리카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을 위한 포괄적인 공공 의료 시스템으로 그들의 건강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 인디언 부족들이 건강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주며, 연방 정부 주정부 지역 정부로부터 유요한 건강 자원을 얻고 종합 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병원과 외래의료, 예방 및 재활 서비스, 사회 위생 시설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무부의 인디언 문제 담당국(Bureau of Indian Affairs)은 내무부 내에 가장 오래된 국(Bureau)으로 1824년 설립되었고 인디언 부족 및 알래스카 원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경제적 기회를 촉진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며 2006년 8월 29일 인디언 문제 담당국 내에 인디언 교육 담당국(Bureau of Indian Education)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내무부의 인디언 특별 재산 관리실 (The Office of the Special Trustee for American Indians)은 1994년 아메리카인디언 신탁기금 관리 개혁법에 의해 인디언 자금의 출납책임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 되었으며 수탁자로서 내무부에서는 그들의 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뿐만 아니라 인디언 부족의 신탁기금 및 개인적인 통화계좌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신탁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처 외의 기관 중 미국시민권 위원회(U.S. Commission on Civil Rights)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국적, 신체장애로 인한 차별사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연구하고 인종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보충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종관련 간행물도 발간하고 있다.

균등 고용 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인종, 피부색, 지역, 성별,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보수, 시험, 훈련 등 모든 고용상의 조건에 있어서 인사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을 집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균등고용기회 위원회의 발의 내용 중 'E-RACE'는 직장에서 인종 및 피부색의 차별 금지를 위하여 고안되었고 이를 위해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인종과 피부색 차별에 기여하는 장벽을 정의하고 인종차별의 청구 소송을 개선해 나가며, 고용에 있어서 인종차별에 대한 공공의식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알려진 은퇴자, 유족, 장애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가의 보험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11).

미국은 1960년대 흑인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을 거치면서 기존의 단일 문화모형을 고집하는 동화주의 정책을 수정하고 차별을 제거하는 통합주의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문화적 집단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한국행정연구원, 2011).

특히 다문화교육 관련하여서는 연방정부가 앞에서 살펴본 관련 법들을 정책 실행을 위한 근거로 삼아 학교 현장에서 이민자 가정 출신 학생, 유색 인종 학생들과 같은 소수자 집단 출신 학생들이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고 필요와 요구가 충족되고 일정한 수준의 학습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 오고 있다(Ovando & Combs, 2018, pp.54-66).

주정부는 교육에 대한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넘어 실제적인 실행을 할 수 있다. 주정부는 공립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내용 규정과 교재 선택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정부는 전 학년과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다문화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격려하거나 필요조건으로 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중 언어 교육, 여성평등, 인디언, 장애 학생들을 위하여 직접 지역 학교구나 대학에 기금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방기금을 주정부에 제공한다. 이 경우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수행을 돕게 된다(장인실, 2006).

또한 공립학교의 경우 그 운영을 주 정부와 카운티가 맡고 있으며 운영필요 자금은 주로 보조금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주에서 그 지역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며 교육행정에 관한 것은 주별 주 교육위원회의 교육구(School districts)에서 맡고 있다. 교육재원의 대부분은 교육구 내 주민에게 부과되고 있는 세금(주로 고정자산세)에 의해 충당되며 연방정부의 재정적 관여는 전미 대부분의 교육구 교육재원의 10%에 미달하는 상황에 있다(손영화&김영순, 2020).

이제는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2.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

1) 미국 다문화교육정책의 전개

미국 다문화교육이 필수적으로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장에서 살펴본 국가 성립의 기초가 이민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민의 역사를 지닌 미국 교육은 동화주의 정책으로부터 문화다원주의로의 전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온 이민자들은 19세기까지는 대부분 북서유럽 국가 사람들이었다. 그 무렵의 미국 사회는 언어적 차이 등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국경개방(open borders)’에 따라 유럽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이주 이루어져 1910년까지는 미국 노동력의 22%, 남부의 도시 이외에서는 38%가 외국 태생이었다(Parker, 2014).

그 이후에는 유럽 전역 즉 동유럽, 중앙유럽, 남유럽에서도 이민자가 몰려들었으며 이

에 대해 먼저 이주하여 정착한 북서유럽계 사람들은 새로 이주 오는 자들 그들의 문화에 동화시키려 노력하였다. 이들의 이런 동화주의는 1924년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며 더욱 강해졌다. 이 시기의 문화적 다양성은 국강의 위기로 간주되어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동화주의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1920년대부터 193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손영화&김영순, 2020).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문화다원주의의 사상이 오늘날 다문화교육의 사상적 기원이고 그 주장의 대표가 카렌(Horace M. Kallen)이었다. 유대계 미국인 철학자 카렌은 1920년대를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 다양한 민족성의 존속과 공존을 이상으로 하는 문화다원주의를 주창했다. 당시 그의 주장은 큰 영향력을 갖지 못했으나 198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의 선구적 존재로 부각되었다(Sunada, E. 2000). 카렌은 공적 영역의 시민생활에서는 합중국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면서도 정신생활에서는 고유한 민족문화를 유지하는 것의 자유를 추구했다. 또한 카렌은 여러 민족문화에 의해 개성이 자라나며 상대적 가치관이 성숙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화다원주의는 오늘날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사상적 기원이라 볼 수 있다(김영순, 2017).

그리고 1920년대 미국에서는 백인중심 역사관에 반기를 드는 아프리카계 교육자·연구자들이 등장하였다. 그 당시에는 교육관련 주요자리에 거의 백인들이 포진해있어 교과서 등 교육 커리큘럼에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역사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통제되었다. 그리고 교육기회는 아프리카계·라틴계 미국인이나 아메리카 원래의 원주민에게는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아프리카계 교육자·연구자들이 그들의 민족 역사를 알리며 그들에게 교육기회가 불평등하게 제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1930~1940년대에는 아프리카 미국인 중 스스로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활동가들도 생겨났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한 1940년대부터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상호의 민족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간 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1960~70년도에는 이 때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소수 인종·민족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관련법과 다문화교육 정책이 실시되게 되었다.

1980년대는 모든 학생 집단들의 평등한 교육성과의 성취와 통합 및 평등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다문화교육이 이론적으로 발전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다문화교육을 현실사회에 적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움직임들이 시작되었으나 아프리카 중심주의에 반대하는 기조로 백인중심의 사회를 연구하는 분야도 새롭게 연구되었다.

현재 미국은 다문화교육의 영향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아

직도 다문화교육을 둘러싼 사회·교육·환경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손영화&김영순, 2020).

이제껏 미국 다문화교육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미국 다문화교육은 문화다원주의를 존중하여 미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래서 미국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균등성의 원칙하에 다양성 존중을 위한 협동과 책임감을 기르는 데 있다(손영화&김영순, 2020)고 한다.

이제는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들이 현재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2)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 현황

미국은 다문화 학생 대상 자국어 및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주 정부 교육과정 차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의 핵심목표로는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을,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의 핵심목표로는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어교육’, ‘교과보충학습’ 및 ‘이중 언어 교육’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을 아래 < 표 2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표 2 > 미국 다문화교육정책 현황 개요

대상	정책이념 (목표)	정책목표관련 문서내용	주요 정책 프로그램	비고
다문화 학생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	· 교육부(2018): “언어 소수 학생에 대한 기회 균등 제공” · 교육부(2017): “주 학업 성취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완전하고 적절한 기회 제공”	· 영어 교육 - 교육과정 개발 - 담당교원의 전문성 개발 - 부모 참여 프로그램 · 교과보조 학습 프로그램	
		· 법무부 & 교육부(2015): 모국어 사용을 통한 교과 학습 결손 방지	· 이중 언어 교육 - 교육과정 개발 - 수업자료 개발 - 개선된 평가 절차마련 - 교육 SW, 튜터링, 상담 교원의 전문성 개발	이중언어교육을 교과 학업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
모든 학생	다문화 감수성 제고	주 정부 교육과정(2018): “문화 다양성 교육”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 교육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시켜 원론적 차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 강조

[자료: www.earticle.net 교원교육 제36권 제1호 참조]

미국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각기 다양한 인종, 문화, 민족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모두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고려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지용, 202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주로 소수 민족을 배려한 교육기회 배분 방안과 다문화의 공존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민자학생을 위한 ESL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관한 주제, 교원연수에서 교사들이 다문화 학습 자료 구성법과 상호관련 촉진 수업 방법 연수, 타문화와 인종 이해, 문화적 자아정체성 형성, 타 문화에 대한 경험 등을 주요 교과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s)에서 미국시민 소양교육과 영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며, 공교육과정에서 반인종 차별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연방정부가 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위해 무료 혹은 저렴한 교육비로 조기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 서비스가 이민자 가족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공적 서비스 접근은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으나, 여성 및 아동의 건강서비스에 국한해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라 하더라도 임신여성은 출산 전·후에 무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게 될 태아가 법 규정상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신여성에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김미나, 2009).

V.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 우수사례 소개

3장에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문화교육’을 ‘다문화 가족이 자신의 문화와 언어에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행해지는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소개할 우수사례는 총 5가지이며 연구자가 미국 오레곤주에서 생활하고 연구하며 접한 내용들을 토대로 소개하게 될 것이다. 먼저 다문화 가족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Welcome to Beaverton’ 책자 발간 사례 소개와 이민자, 난민 및 주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지역조직

‘The Immigrant and Refugee Community Organization(IRCO)’ 소개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새로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MIGRANT EDUCATION PROGRAM(이민자교육프로그램)’과 ‘High School Equivalency Program (고등학교 동등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기존 구성원들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행사 ‘Welcoming Week’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각 우수사례는 그 사례를 소개하게 된 배경과 이 사례 소개를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될 참고사항 및 사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1. ‘Welcome to Beaverton’ 책자 발간 사례

1) 우수사례 소개 배경

‘Welcome to Beaverton’은 오리건 주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비버튼’에 새로 이주한 이민자나 난민들을 위해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기관 목록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이다.

※ 관련 사이트:

<https://www.beavertonoregon.gov/DocumentCenter/View/26424/Welcome-to-Beaverton-Packet>

< 표 3 > ‘Welcome to Beaverton’ 책자

책자표지(2019년 2월)	목차
	<p>TABLE OF CONT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City of Beaverton's Helpful Information..... Page 4 Language Access at the City of Beaverton and English Classes..... Page 4 Life in America..... Page 5 Connect With People From The Same Heritage..... Page 5 Getting to Know Your City..... Page 6 Utilities..... Page 7 Emergencies, Medical, Mental Health & Dental Care..... Page 8 Public Transportation..... Page 9 Food Assistance..... Page 10 Markets, Grocery & Specialty Food Stores..... Page 11 Places of Worship..... Page 12 Banks & Financial Institutions..... Page 14 Clothing, Household Goods, Furnishings & Thrift Stores..... Page 15 Agencies Providing Immigrant and Refugee Services..... Page 16 <p>FOR OTHER INFORMATION NOT FOUND HE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l 211. • Or check website: http://211info.org. • Or http://refugeecenter.org.

[자료: <https://www.beavertonoregon.gov/DocumentCenter/View/26424/Welcome-to-Beaverton-Packet> 에서 발췌]

서울시에도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현재 446천명으로 서울거주 인

구(9,673천명)의 4.6%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그 구성을 보면 외국인근로자(70천명), 결혼 이민자(32천명), 유학생(44천명), 외국인주민 자녀(31천명) 등이다. 서울시에서도 새로 이주한 외국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이주민을 위해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비버튼의 우수사례를 알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소개한다. 소개에 앞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주관기관 비버튼 시에 대해 먼저 파악해보자.

2) 비버튼 시 특징

비버튼 도시의 연혁을 살펴보면 비버튼은 1893년에 도시로 통합되었고 2015년에 공식적으로 모든 신규 이민자를 환영하고 다문화간 관계 촉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며 ‘환영 도시(Welcoming City)’가 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 시의회 또한 만장일치로 비버튼을 ‘안식처 도시(Sanctuary City)’로 선언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비버튼시의 인구는 97,514명이고 비버튼주민 5명 중 1명은 미국 밖에서 태어났으며 주민들이 100개 이상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비버튼시의 비전은 ‘비버튼에 사는 모든 주민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난민, 이민자도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포용하는 다민족 사회로 통합 추구’이다.

3) ‘Welcome to Beaverton’ 책자 발간 개요

이 책자는 난민, 이민자도 지역사회에서 환영을 받음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난민 및 기타 신규 이민자들에게 비버튼시 정착을 위한 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발간주체는 비버튼 시장실이지만 실제적인 제작인은 비버튼내 자원봉사자 2인(Piyawee Ruenjinda, Joan Goldhammer)이다. 이들이 각각 약 100시간을 투자하여 컨셉 설정, 정보수집을 위한 조사(전문 시장, 학교 등) 등을 수행하며 작성하게 되었고 비버튼시는 그래픽 디자인, 인쇄를 위한 지원과 시홈페이지에 파일을 공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책자는 2019년 2월에 첫 발간 후 이후 아쉽게도 업데이트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자를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제작자 2인이 학군, 종교단체, 커뮤니티 기반 각 단체들에게 연락하여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전달하고 있다.

이 책자는 새롭게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 비버튼 시의 유용한 정보

- ▶ 문화통합 프로그램, 기업, 문화 행사,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고용, 이웃 등 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 소개 등

- 비버튼 시에서의 언어지원 사항

- ▶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와 혜택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영어실력과 상관없

이 무료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 ▶ 영어 수업진행 하는 곳 소개(ESL/ESOL):
 - 비버튼 문맹 퇴치 위원회: www.beavertonliteracy.org
 - 베델: www.bethelbeaverton.org/esl
 - 난민의 친구들: www.pdxfriendsofrefugees.com/about-us
 - 친선: <http://goodwilljobconnection.org/esl/free-classes>
 - 포틀랜드 커뮤니티 칼리지: www.pcc.edu/esol/other-ways
 - 포틀랜드 ESL 네트워크: www.portlandesl.com 등
- 미국 생활에서 필요한 공통 정보 소개
 - ▶ 운전면허증 취득, 시민권 수업, 의사를 찾는 방법 및 보건 의료, 은행개설 등
- 같은 문화유산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 독려
 - ▶ 문화협회 및 비영리단체, 모임, Meetup.com, 교회 등을 통한 교류 독려
- 도시 알아보기
 - ▶ 공용도서관, 파머스 마켓 등 지역사회 정기행사, 보안사무소 등
- 수도 전기 등 공익사업 안내
 - ▶ 전기회사, 정전 또는 긴급사항 연락처, 쓰레기 및 재활용, 수도국 등
- 응급 상황, 의료, 정신 건강 및 치과 치료
 - ▶ 비버튼 경찰서, 정신건강 응급 상황 상담처, 자살예방전화, 긴급치료센터 등
- 대중 교통
 - ▶ 버스, 경전철 및 통근철도 정류장, 대중교통카드 구입/충전, 택시호출번호 등
- 식량 지원
 - ▶ 오레곤 푸드뱅크 등 무료 식품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 등 안내
- 시장, 식료품 및 특산품 매장
- 예배 장소
 - ▶ 불교, 카톨릭교, 크리스찬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각 종교의 연락처 안내
- 은행 및 금융 기관
 - ▶ 외화교환, 대출, 현금수표, 예금 등을 위한 각 은행별 위치, 연락처 안내
- 의류, 가정용품, 가구 및 중고품 매장
 - ▶ 회원가입 필요 매장, 거의 모든 항목이 \$1.00인 달러트리, 중고매장 등 안내
- 이민자 및 난민 서비스 제공 기관
 - ▶ 비버튼시에 위치하지 않지만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오리건 난민 서비스의 가톨릭 자선단체 등의 사이트, 연락처, 지원서비스 내용 등 정보 제공

4) 이 책자 발간 관련 특이사항 및 시사점

이 책자의 제작자(Piyawee Ruenjinda)는 이 책자가 자원봉사자에 의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어 지길 바라지만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어 다른 언어 버전은 없다. 또한 책자에 대한 의견, 질문 또는 제안 사항은 이메일(WelcometoBeaverton@gmail.com)을 보낼 수 있다고 안내하며 사용자로부터의 피드백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2022.3월말 현재까지 5통 이하의 피드백을 받았다고 한다. 이 책의 주요 대상자인 이민자, 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활발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초창기 정착시에 영어에 익숙지 않을 확률이 큰 점을 감안하여 그들의 언어로 제공됨이 더 바람직 할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의 한계 상황이 안타까웠다.

2. 오리건주 국제난민센터(IRCO) 운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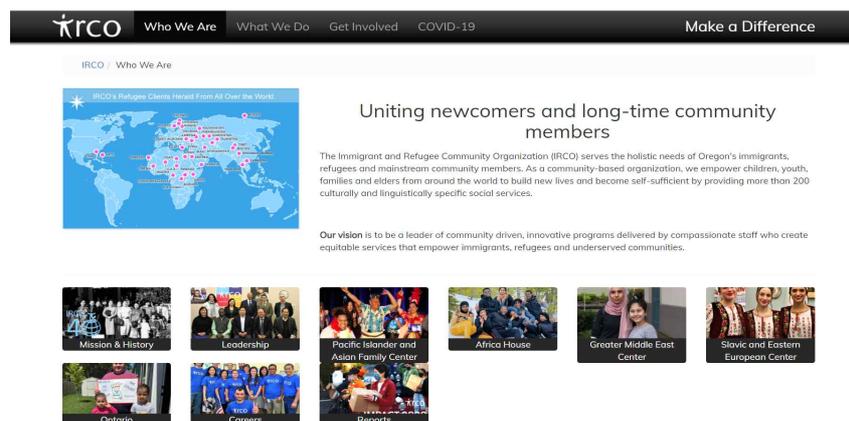
1) 우수사례 소개 배경

‘The Immigrant and Refugee Community Organization (IRCO)’은 오리건주의 이민자, 난민 및 주류 지역사회 구성원의 전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다.

※ 관련 사이트: <https://irco.org/who-we-are/>

<https://www.beavertonoregon.gov/DocumentCenter/View/26424/WelcometoBeavertonPacket>

< 그림 7 > 오리건주 국제난민센터(IRCO) 홈페이지



[자료: 관련 사이트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가족이 한국생활 시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1위(26.2%)로 ‘외로움’을 2위(24.1%)로 ‘언어문제’를 3위(22.3%)로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4위(19%)로 꼽고 있는 실정(‘18년 여성가족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참조)으로 다문화가족이 서울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수립을 위해 오리건주에서 40년간 운영된 ‘The Immigrant and Refugee Community Organization (IRCO)’의 조직운영 사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오리건주 국제난민센터(IRCO) 개요

이 조직은 ‘이민자, 난민, 소외된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공평한 서비스를 만드는 인정 많은 직원들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리더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며 ‘난민, 이민자, 지역사회를 자급자족하고 건강하고 포용적인 다민족 사회로 통합하는 것’을 미션으로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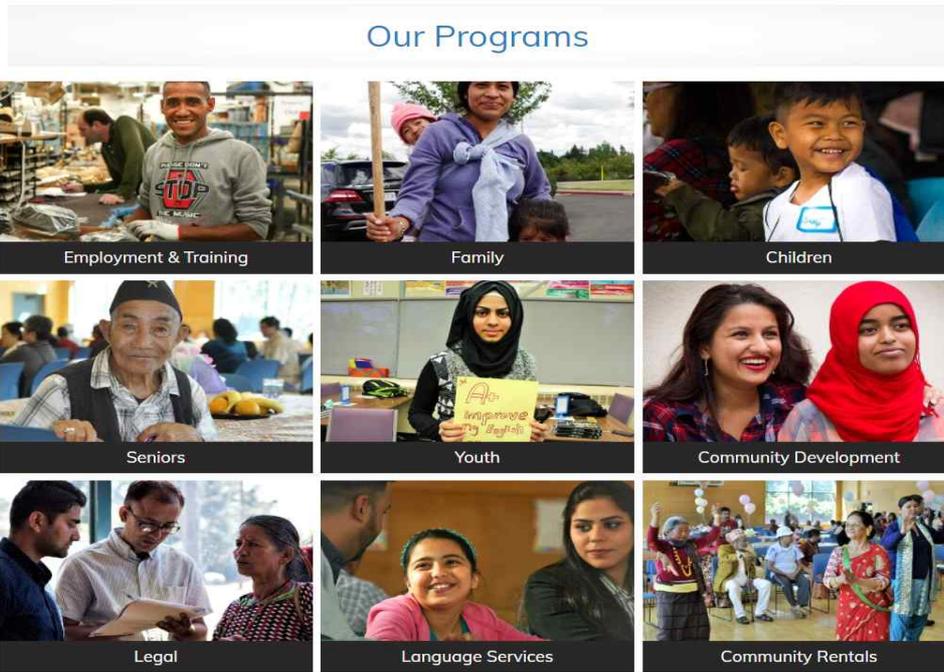
IRCO의 연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976년 난민들이 난민을 위해 설립
 - ▶ 포틀랜드 난민 및 이민자 커뮤니티와 함께 역사와 경험이 40년 이상됨
 - ▶ 1970년대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격변 이후, 오리건주와 워싱턴주는 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집을 제공한 최초의 두 주였음
 - ▶ 포틀랜드에 있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난민들은 새로 도착한 가족들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차이나문화서비스센터(ICSC)를 구성함
- 80년대 중반, ICSC는 다른 지역사회기반 조직인 동남아시아 난민 연맹(SEARF)과 합침
 - ▶ 새로 형성된 오리건주 국제난민센터(IRCO)는 새로 도착한 모든 난민들을 위한 고용 서비스와 직업 훈련의 유일한 서비스 제공자가 됨
- 1994년에는 문화적·언어적으로 최초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시아패밀리센터’ 설립함
- 2001년에 이민난민공동체기구가 되었고
- 2006년에는 아프리카 하우스를 설립함

이 조직의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오리건주의 기존 지역사회와 새로 도착한 지역사회 간의 이해, 연민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봉사 활동 및 교육을 지원함
 - ※ 오리건주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난민 및 이민자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 고국을 떠나야 하는 난민과 이민자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포틀랜드로 옴
- IRCO는 고용, 직업 훈련 및 영어 학습에서 지역 사회 개발, 유아 및 육아 교육, 청소년 학업에 이르기까지 200개 이상의 문화 및 언어 특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급자족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개인과 가족이 번영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둠
- 직업훈련/고용, 가족/아이/어른/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지역사회개발, 법률상담, 언어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 그림 8 > 오리건주 국제난민센터(IRCO) 프로그램



[자료: 관련 사이트 참조]

예) Language Services : 국제 언어 은행 운영

- IRCO의 국제 언어 은행(ILB)은 포틀랜드 메트로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잘 알려진 언어 서비스 제공업체로 아래 내용을 서비스함
 - 사전 예약된 전화/대면 통역서비스 (오리고니아어 통역사만 사용하여 지역경제 지원)
 - 대면 불가시 비디오 통역 서비스 (사전 예약 없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
 - 다른 언어로 번역된 문서가 필요시 시스템 내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지원 (연락처) 통역 서비스: Interpretation@ircoilb.org | 503.234.0068
 - 번역 서비스: translation@ircoilb.org | 503.505.5186.

3. 이민자교육프로그램(MEP) 운영 사례

1) 우수사례 소개 배경

‘Migrant Education Program(이하 MEP, 이민자교육프로그램)’은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이주 학생들이 도전적인 학문적 기준에 도달하고 책임 있는 시민권, 더 나은 학습, 생산적인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졸업장(또는 HSED 수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 관련 사이트: <https://results.ed.gov/legislation>

< 그림 9 > 이민자교육프로그램(MEP) 홈페이지





LEGISLATION & POLICY

This section includes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legislation and policy related to the Migrant Education Program.



The Migrant Education Program (MEP) is authorized by Title I, Part C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of 1965, as amended. There are several legislative, regulatory, and policy documents that apply to the operation of the MEP.

RELATED INFORMATION
 For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Migrant Education Program (MEP) and the 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OESE), visit the [Department of Education's](#) site.

[자료: 관련 사이트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자녀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노출됨으로써 사회통합의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의 ‘MEP(이민자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은 서울시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립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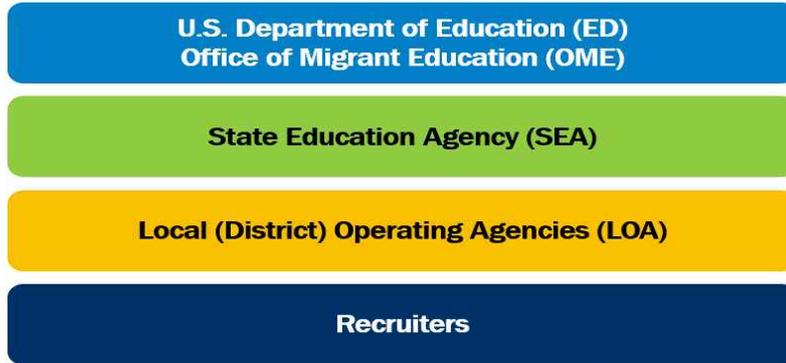
2) ‘MEP(이민자교육프로그램)’ 개요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MEP)은 수정된 1965년 초중등 교육법(ESEA)의 Title I, Part C에 의해 승인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목표는 ‘모든 이주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High School Equivalency Diploma (HSED)을 취득하여 더 심화된 공부, 생산적인 취업,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의 성장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조직 체계는 아래와 같다.

< 그림 10 > 이민자교육프로그램(MEP) 운영체계도

MEP Organization



[자료: 관련 사이트 참조]

- 이민자 교육 사무국(OME)은 전국의 이민자 교육자들을 위한 필수 리소스인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 식별 및 모집 매뉴얼 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함
 - ※ 식별 및 매뉴얼: 적격이주아동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아 등록하는 것은 MEP의 기초사항으로 적격이주아동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모집할 수 있도록 도움
- 각 주의 상황에 맞는 MEP를 구현하고 운영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주의 책임임
- 각 주마다 이주아동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주에서 이주아동의 고유한 필요와 관련된 주별 지침을 개발함
- 지역운영기관(Local Operating Agencies)은 연방 MEP 정책 문서와 주 MEP 지침을 검토하여 해당 주에서 MEP가 잘 실행되도록 운영함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MEP)의 주요활동 및 성과는 아래와 같다.

- 개인 및 소규모 그룹 과외
- 여름, 청소년 리더십 및 기타 학업 및 육성 프로그램
-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수업, 성인 기초 교육 수업, 지역사회 서비스 추천
- 지원 의료 서비스

< 그림 11 > 2016~17년 MEP에 참여한 이주 청소년 수

(※ 미국의 교육체계는 초등5/중등3/고등4학년이며 초등~고등학교까지 1~12학년으로 표시함)



[자료: 관련 사이트 참조]

3) 'MEP(이민자교육프로그램)'의 성공 사례

MEP(이민자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잘 성장한 MARIA VILLASANA(KY)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 MARIA VILLASANA(KY)의 성공 스토리 :‘현재의 나를 만든 MEP’

※ 관련 사이트:

https://results.ed.gov/resources/news_stories/the-migrant-education-program-made-me-who-i-am-today-the-success-story-of-maria-villasana

[MEP 과정수료]

- Maria Villasana는 매년 조지아와 켄터키 사이를 이주하며 수년간 이민자 학생이었고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노력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일했으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였는 상황이었다.
-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 교사가 그녀의 학문적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지속적인 도움을 주어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며 그녀 자신도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이 탁월하며 이 프로그램의 교사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마리아]

- 이제 다섯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여 2017년 12월에 사회사업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Clark County School System의 교육 통역사이다.
- 마리아는 최근에 미국에 온 이민자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러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계속 학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녀의 학생들은 마리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마리아의 미래설계]

- 그녀는 켄터키주에 있는 그녀의 고향 카운티에서 이민자 및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ESL) 학생들을 위한 교사로 자원 봉사할 계획이며 그녀의 자기 동기 부여가 이민자 프로그램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자신감과 지식 때문이라고 말한다.

4. 고등학교 동등 프로그램(HEP) 운영 사례

1) 우수사례 소개 배경

‘High School Equivalency Program(이하 HEP, 고등학교 동등 프로그램)은 16세 이상이고 현재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이주 및 계절 농장 노동자(또는 그러한 노동자의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장에 상응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 관련 사이트:

<https://oese.ed.gov/offices/office-of-migrant-education/high-school-equivalency-program/>

< 그림 12 > 고등학교동등프로그램(HEP) 홈페이지



High School Equivalency Program

PROGRAM OFFICE	Office of Migrant Education
CFDA NUMBER	84.141A
PROGRAM TYPE	Discretionary/Competitive Grants
ALSO KNOWN AS	HEP

Contact Information
Millie Bentley-Memon U.S. Department of Education, OESE Office of Migrant Education 400 Maryland Ave. S.W.

[자료: 관련 사이트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자녀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노출됨으로써 사회통합의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이주 및 계절 농장 노동자(또는 그러한 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은 서울시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립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2) 'HEP(고등학교 동등 프로그램)' 소개

HEP(고등학교 동등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주 및 계절 농장 노동자와 직계 가족을 돕는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기관은 초등 및 중등교육 담당실(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이다.

< 표 4 > 초등 및 중등 교육 담당실(OESE) 개요

초등 및 중등 교육 담당실(OE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명: 모든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주, 학군 및 기타 조직에 권한 부여 ■ 비전: 모든 학생을 위한 우수성과 형평성 ■ 핵심가치: Collaboration(협동), Accountability(책임), Diversity(다양성), Integrity(무결성), Excellence(우수) ■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및 중등 교육 차관보는 초등 및 중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교육 장관의 수석 고문 역할을 합니다. OESE는 다음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을 지시, 조정 및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및 지역 교육 기관이 미취학 아동,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의 성취도를 향상하도록 도움 · 모든 아동이 성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지원 (저소득 가정 출신, 장애 또는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 교육적으로 불리한 아동, 영어 학습자, 아메리카 원주민, 이민자, 노숙자 또는 위탁 양육 중인 아동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임) · 주 및 지역 차원에서 교육 개선 촉진 · 지역 수입이 연방 활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 교육 기관에 재정 지원 제공

[자료: 관련 사이트 참조]

HEP(고등학교 동등 프로그램)의 주요 추진 사항은 HEP가 수행되는 주마다 대상자에

계 중등 이후 교육 또는 훈련을 시작하고 설정한 the guidelines for high school equivalency(HSE) 지침을 충족하면 일반 교육 졸업장을 취득한 후 업그레이드된 고용을 얻거나, 고등교육기관 또는 기타 고등교육 또는 훈련에 배치되거나 군에 입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HEP(고등학교 동등 프로그램)의 학생지원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적격 참가자 모집
 - 학생이 살고 있는 주에서 고등학교 학력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 제공
 - 개인, 직업 및 학업 상담을 포함한 참가자 지원
 - 대학, 단기대학 또는 군 복무에 학생을 배치 및 건강 관리
 - 이용 가능한 학생 재정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지원
 - 고등학교 동등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급여 지원
 - 주거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들을 위한 숙소 지원
 - 문화행사, 학술프로그램 체험, 이주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교육 문화행사 알림
 - 필요한 경우 참여 학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기타 필수 지원 서비스
- 예) 이민자 학생들이 직면하는 장벽을 해결하기 한 지원
(과외, 멘토링 및 코칭, 취업 알선, 운송, 육아, 수업료 지원 등)

HEP(고등학교 동등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은 매년 약 5,000명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HEP에 대한 정부의 성과측정 방법에 따른 결과는 아래 < 표 5 >, < 표 6 >과 같다.

< 표 5 > 고등학교 동등 학위(HSED)를 받는 HEP 참가자의 비율

회계연도	HSED 취득 목표율	HSED 실제 취득율
2017	69%	67.5%
2018	69%	64.9%
2019	69%	
2020	69%	
2021	69%	

※ High School Equivalency Diploma (HSED)

< 표 6 > HSED 수혜자의 비율: 중등 이후 교육 훈련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된 고용 또는 입대한 사람

회계연도	HSED 수혜자 목표율	HSED 실제 수혜자율
2017	80%	85.6%
2018	80%	82.1%
2019	80%	
2020	80%	
2021	80%	

[자료: 'REPORT TO CONGRESS_High School Equivalency Program (HEP) and College Assistance Migrant Program (CAMP) FY 2020'에서 발췌]

5. 'Welcoming Week' 운영 사례

1) 우수사례 소개 배경

다양한 민족의 문화 수용을 위해 Beaverton(비버튼)에서 열리는 ‘Welcoming Week’은 이민자, 난민, 그리고 미국 태생 주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환영하는 것에 대한 이점의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 관련 사이트: <https://www.beavertonoregon.gov/1959/Welcoming-Week>

< 그림 13 > ‘Welcoming Week’ 행사안내 아이콘

WELCOMING WEEK



[자료: 관련 사이트 참조]

앞서 ‘1. ‘Welcome to Beaverton’ 책자 발간 사례’를 소개할 때 언급했던 바와 같이 비버튼시는 2017년 7월 현재 총인구 97,514명에 이중 5명 중 1명은 미국 밖에서 태어났으며 주민이라 한다. 미국외의 곳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비버튼을 ‘안식처 도시(Sanctuary City)’로 느끼기를 목표로 이들을 위한 ‘환영 도시(Welcoming City)’가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 ‘Welcoming(환영)’ 이 왜 중요할까요?

[자료: <https://welcomingamerica.org/what-is-welcoming/> 에서 발췌]

- ▶ 지역사회가 상당한 변화를 겪을 때,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을 경험에 준비되지 않아 오해와 긴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골적인 폭력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 ▶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환영하는 가치를 인식하고 새로운 사람을 포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모든 주민이 사회적, 시민적, 경제적 구조를 강화하는데 있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문화 및 정책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 우리가 다양성에서 힘을 찾고 두려움과 분열을 적극적으로 저항할 때 우리는 모든 주민이 번창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의 재능, 기술, 공헌을 완전히 활용하는 탄력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

Beaverton(비버튼)에서 열리는 ‘Welcoming Week’ 행사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는 지를 조사하고 소개하는 것은 서울시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이 서울시민으로 건강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참고가 될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2) ‘Welcoming Week’ 행사 운영

2021년 비버튼 ‘Welcoming Week’은 “Belonging Begins With Us”라는 주제로 전국 지역 사회의 행사들과 함께 2021년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Welcoming Week’의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하게 됨을 축하하고 문화 간 관계와 이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행사 주제는 국가 파트너인 Welcoming America에서 결정한다.)

비버튼시는 이 행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셜 미디어 채널(Facebook, Email Blasts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한다. 그리고 비버튼 환영 주간 연례 행사 동안 이민자들과 미국 태생 주민들이 문화 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시적인 기회를 창출하는 쌍방향, 지역사회 주도형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후원한다.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 행사관련 이벤트를 주최하려는 모든 사람의 신청서를 받아서 4명의 팀이 일련의 심의를 통해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대 1,500달러를 지원받을 보조금 지원자를 결정한다. 지원금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버튼시의 보조금 지원 목적은 문화 간 교류의 기회를 늘리는 지역 사회 주도 프로젝트 지원, 환영하는 도시로서 Beaverton의 정체성 구축, 주민을 하나로 묶는 관계 및 이해 구축, 주민 모두의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한 자부심 함양에 있으며 보조금은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문화 행사, 커뮤니티 모임, 워크샵, 수업, 미술 전시회, 영화 상영회 또는 지지행사와 같은 ‘Welcoming Week’의 정신을 강조하는 공공 행사나 활동을 주최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

※ 보조금 지원 내역 예시

- ▶ Welcoming Beaverton Potluck, A Taste of Africa 등

(<https://www.beavertonoregon.gov/1946/Past-Welcoming-Week-Projects> 참조)

주민들이 이 행사 참여하는 방법은 공개이벤트 개최하거나 아래의 ‘I’m a Welcomer’ 사진 중 하나의 사진을 찍어서 #BeavertonWelcomes와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며 행사에 참석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경험을 공유한다.

< 그림 14 > ‘I’m a Welcomer’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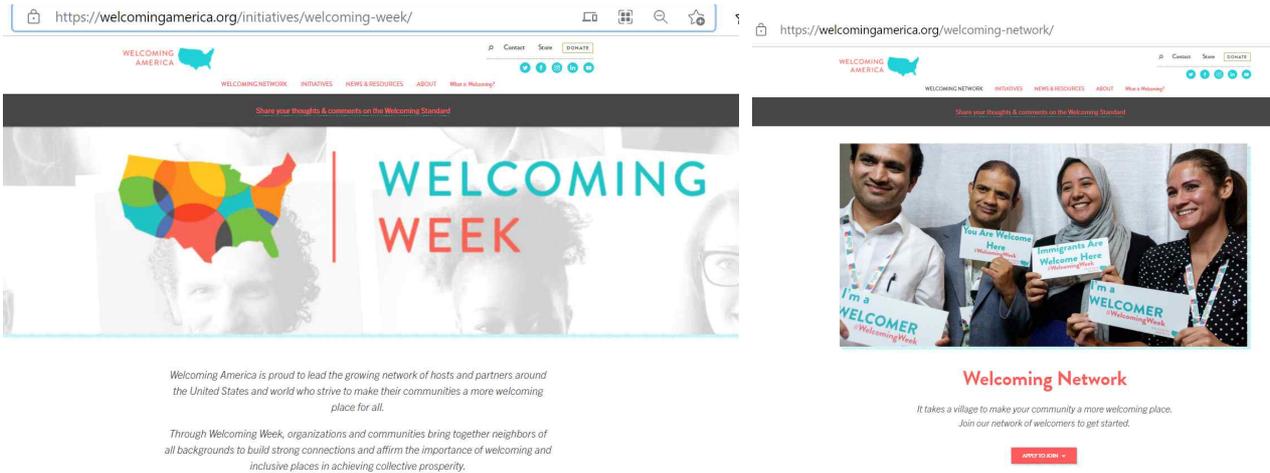
[자료: 관련 사이트 참조]

매년 열리는 비버튼의 ‘Welcoming Week’은 2022년에는 ‘the broader city-wide

Welcoming Beavert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2022년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연락처: equity@BeavertonOregon.gov. 503-526-2439)

참고로 미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이주민을 환영하는 행사는 'see Welcoming America' (<https://welcomingamerica.org/initiatives/welcoming-week/>)를 참조하면 된다.

< 그림 15 > see Welcoming America 관련 페이지



[자료: 관련 사이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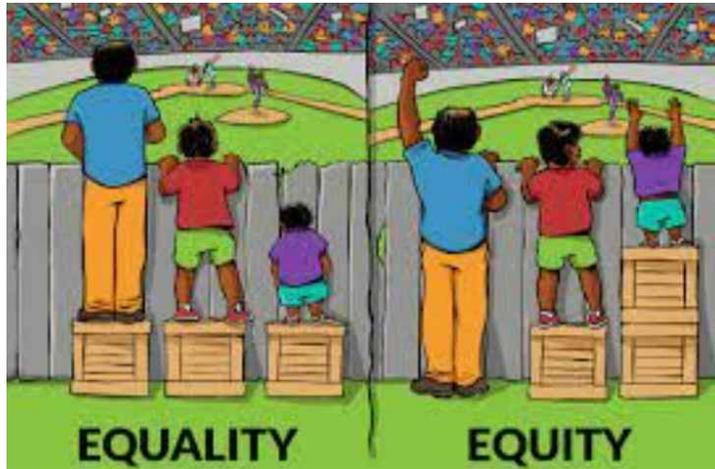
VI. 결론

이제껏 우리는 다문화사회의 대표격인 선진국 미국의 역사와 다문화 관련법과 정책의 발달 과정 및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1776년 성립되어,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방 국가다. 미국의 인종 구성은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 다양하다.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종의 사람이 북미 대륙으로 이주하였다. 특히 유럽, 아시아와 남미로부터 수백만의 '자발적'인 이주민들이 북미 대륙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주해 왔고 또한 계속해서 이주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후손이다. 미국은 법에 의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이다.

다양한 인종 및 이민자로 구성된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소수민족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는 평등의 개념이다. 여기서의 평등은 < 그림 16 > 에서와 같이 제공자의 입장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균등'이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공평'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 그림 16 > '균등'과 '공평'의 차이



[자료: PSU 세미나 Errin Beck의 'Title III of the ESSA(초·중등교육법)' 에서 발췌]

미국의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에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여 개개의 문화가 미국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도 미국은 흑인을 혐오하여 발생하는 총기사고 등 다문화로 인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견주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문화 담론의 역사가 그리 깊지 않다. 그래서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에 다문화 관련 사항이 직접적으로 기술된 바가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다문화 관련 사안을 제도화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다문화 관련 법규의 근간은 「국적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이렇듯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통일 법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및 정책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2023년)부터 5년간 적용될 4차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5년 중장기 계획과 매년 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2년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의 보편적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과정 온/오프라인 운영,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안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10개 전문분야(법률, 세무, 노무, 비자, 금융, 인건, 취업, 환경, 민주시민, 젠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외국인주민의 원활한 소통과 인식 개선을 위해 「외국인주민회의」, 「서울타운미팅」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제반 불편사항과 정책 제안 등을 청취하여 정책

에 반영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사업’은 외국인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외국인주민 상호간 연대를 통한 소속감 강화를 위해 외국인커뮤니티가 주최가 되어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공모 후 선정심사를 통해 단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2021년에는 7개 커뮤니티 및 단체를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도 이 행사를 위해 30백만원의 예산으로 6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행사는 미국 오리건주 비버튼시의 ‘Welcoming Week’행사가 시에서 주관하며와 역사적으로 소외된 커뮤니티(유색인종, 이민자, 난민, 노인, 저소득자 등)가 고유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동일 기간, 동일 장소에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개별적 일정으로 외국인커뮤니티별로 국지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로서 일반시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에는 아쉬운 점이 보인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필수 기본교육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학습멘토링 등 교육지원사업과 생활상담, 진로탐색 및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상담사업,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등의 문화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이용인원은 13,572명에 이른다. 2021년까지는 서울시와 현대차의 민관협력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2년에는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명칭을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운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도입국 청소년지원 상설협의체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다문화사회를 이루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기 위한 사회통합적 관점의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이민자교육프로그램(Migrant Education Program)’과 ‘고등학교 동등 프로그램(High School Equivalency Program)’을 살펴보고 우리가 수용가능한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문화교육의 정책 방향을 정립해 본다면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피부색, 인종, 출신국가로 인한 편견을 가지기 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서로 인식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이점을 부각시켜 운명공동체로서 서로를 환영하고 아끼고 도와주는 것이 낫설지 않는 환경조성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이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해 주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존중과 배려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의 다문화교육 정책이 빠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명엽. (2016). 우리나라 다문화관련 법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입법정책*, 10:1, 153-176
- 김미나. (2009).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행정논총* 제47권4호, 2009.9.
- 김복래. (2009). 프랑스, 영국, 미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교고찰
- 김영순. (2017).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북코리아.
- 손영화&김영순. (2020). 미국 다문화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고찰, *교육문화연구* 제26권 제3호, pp.611-635 :
- 은지용. (2020). 한국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 *교원교육* 제36권 제1호
- 장동진 & 황민혁. (2007). 외국인노동자와 한국민족주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7집 제3호 p.232
- 장인실. (2006). 미국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제24권 4호. p.38
- 정의철. (2013).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2013. 2. 25.
- 최윤철. (2012).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41집 제2). 2012년 12월.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 89권 제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6. p.201
- 한국행정연구원. (2011). 선진각국의 정부조직 관리체계 연구, 행정자치부 연구책임자 서원석. 2011.12
- Banks, J. A. (2020). *Multicultural education : issues and perspectives* (Tenth edition.). John Wiley & Sons.
- Mitchell, B. M., & Salsbury, Robert E. (1996). *Multicultural education : an international guide to research, policies, and programs*. Greenwood Press.
- Ovando, C. J., & Combs, M. C. (2018) *Bilingual and Esl Classroom: Teaching in Multicultural Contexts*.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 (Parker, 2014)
- Parker, C. B.(2014. 8. 7), European immigrants to America in early 20th century assimilated successfully, Stanford economist says, Stanford Report.
<<https://news.stanford.edu/news/2014/august/immigration-myth-debunked-080714.html>>.
- Sunada, E.(2000), Revisiting Horace M. Kallen's Cultural Pluralism: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American and Canadian Studies* 18, 51.